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대 중 교통 과

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제출연월일: 2025. 5. . 번 호 제 출 자: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 편의. 이동권 증진 도모 및 교통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지원 대상, 체계 구축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다. 교통카드 대여 금지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9조)

라.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,

「도시철도법」,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북도

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통과

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 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 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어르신"이란 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 - 2. "대중교통"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 1의 제1호,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,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 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.
 - 3. "대중교통 이용 지원"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대중교통(시와 환승· 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)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4. "교통카드"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업무 제휴, 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기관 등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.

- 제3조(책무) 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, 대중교통의 요금할인 및 이용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.
- 제4조(지원 대상 등)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의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.
- 제5조(지원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등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(이하 "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"이라 한다) 또는「은행법」제2조에 따른 은행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,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대해서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 -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·장비등의 개선
 - 2.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액 지원
 - 3. 그 밖에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제6조(이용방법) 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제9조에 따른 내용을 공지하고,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9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7조(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)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(讓渡)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.
- 제8조(손실액의 지원)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교통카드정산 사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손실액을 청구하는 경우,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,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지원 중단 등) 시장은 교통카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

- 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- 2. 제4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3.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
- 4.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0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 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 - 3.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
- 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[별표]

<u>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(제4</u>조 관련)

구 분	지원 대상	할인율	비고
어르신	•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	100분의 100	

관계법령

□「노인복지법」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□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7조(자동차의 종류)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

1.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: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(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).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가. 시내좌석버스: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

급행형,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. 시내일반버스: 제8조제6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 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

- 4. 마을버스운송사업: 중형승합자동차. 다만,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.
- 7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

□「도시철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도시철도"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·운영하는 철도·모노레일·노면전차(路面電車)·선형유도전 동기(線形誘導電動機)·자기부상열차(磁氣浮上列車) 등 궤도(軌道) 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

□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. "광역교통시설"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나.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(「도시철도법」 제 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철도(「철

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(이하 "광역철도"라 한다)

□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의8(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 및 제출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(이하 "대중교통운영자등"이라 한다)와 「전자 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,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(이하 "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"이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□「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재정지원) ① 도지사는 시장·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·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.

<u>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</u>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재정수반요인
 - 이 조례의 안 제5조 및 제8조
- 2. 비용추계의 전제
 - 도입 2년 차(안정기) 손실액 지원비 3,489백만원¹)에서 연도별 대상자 평균 증가율 11%를 고려하여 지원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도비	203	1,046	1,151	1,266	1,393	5,059
게 됩	소계(a)	203	1,046	1,151	1,266	1,393	5,059
	손실액 지원비	1,478	3,489	3,837	4,221	4,643	17,668
세출	시스템운영비2)	50	50	50	50	50	250
게팔	카드발급비3)	120	-	30	_	_	150
	소계(b)	1,648	3,539	3,917	4,271	4,693	18,068
□총	비용(a-b)	△1,445	△2,493	△2,766	△3,005	△3,300	△13,009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도 비	203	1,046	1,151	1,266	1,393	5,059
시비	1,445	2,493	2,766	3,005	3,300	13,009
합 계	1,648	3,539	3,917	4,271	4,693	18,068

¹⁾ 道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

²⁾ 기존 구축·운영 중인 시스템에 참여함으로 추후 참여시군 증감에 따른 운영비 증감가능성 有

³⁾ 카드발급비 = 장당3,000원(도입년도 40,000장 제작 후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제작)

5. 부대의견

현행 도비 지원 비율 30% 상향 요구 또는 대상 인원이 큰 지자체 차등 지원 요구 필요

6. 작성자

○ 대중교통과 광역교통팀 신우성(☎480-2929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연도별 대상인원

(단위 : 명)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대상인원	31,446	35,010	38,834	43,064	47,507
증가인원	_	3,564(11.3%)	3,824(10.9%)	4,230(10.9%)	4,443(10.3%)

2. 연도별 손실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손실액	1,478	3,489	3,837	4,221	4,643

- ※ 2025. 7. 1. 시행에 따라 1차년도(도입기) 손실액은 교통카드 발급량및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
- ※ 2차년도 이후 손실액 = 전년도 손실액 × 대상인원 평균 증가율(11%) 4)

⁴⁾ 예) 4차년도 손실액 = 3,837백만원 × 11%

ব	는 관 부 서	대중교통과
입	과 장	임 춘 옥
안	팀 장	전 종 훈
자	담 당 자	신 우 성 (480-2929)